

[붙임 1] 구비서류 발급방법

필수 서류	발급 방법
① 구직활동계획서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
② 주민등록 초본	·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 ☞ 온라인 신청 기간 (1일~15일)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③ 주민등록 등본	
④ 졸업(제적)증명서	· 해당대학 행정실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 · 해외대학 졸업(제적) 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번역행정사의 번역·공증 필요
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고용보험 / 상용조회)	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이용할 경우 ①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이력) ② 출력할 날짜 : 2023.01.01. ~ 신청월 15일 ·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이용할 경우 ① 개인/일반근로자 로그인 ② 증명원 신청/발급 ③ 개인>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선택[보험구분 : 고용 / 조회구분 : 상용] 후 조회 *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 후 제출 ☞ 온라인 신청일(1일~15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
* (해당자만) 근로계약서	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(근로중인 경우) 주 30시간 미만 근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☞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사본 제출
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	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또는 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이용(T.1577-1000) ① 개인 로그인(본인 또는 가입자 공인인증서 필요) ② 민원여기요>개인민원>증명서 발급/확인
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- 자격확인서 (모두 선택) - 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 체크 / 2023년 전체분 발급)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발급)
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*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,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,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☞ 온라인 신청일(1일~15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 신청월 기준 2022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
* (해당자만)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	· 발급처 : 고용노동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·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시 해당 서류 제출시 지원가능 ☞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수령한 경우 추가 제출 요망 (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/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2장 모두 제출 시 인정)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 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(※ 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)
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